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제정 : 1998. 04. 06.

개정 : 2008. 06. 26.

개정 : 2018. 09. 14.

담당 : 교학팀(02-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의 임기)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	제6조(회의록)	제7조(운영세칙)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관 제51조 내지 제58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한국성서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총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,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 - 2. 총장이 부총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
 - 3. 위원회가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4. 교원의 업적을 관리,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(신설08.6.26)
- ② 위원회가 정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 - 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 - 3. 건학 이념의 구현 및 본 대학교 발전에의 기여도
 - 4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의유지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(개정18.09.07)
-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(위원장을 포함한다)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

-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